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 정관시행세칙

2011. 04. 제정
2012.03. 1차 개정
2013.02. 2차 개정
2014.05. 3차 개정
2014.08. 4차 개정
2015.01. 5차 개정
2016.02. 6차 개정
2017.03. 7차 개정
2018.01. 8차 개정
2019.01. 9차 개정
2020.06. 10차 개정
2026.04. 11차 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회 원
제 3 장 임 원
제 4 장 총 회
제 5 장 이사회
제 6 장 기 구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8 장 운영위원회
제 9 장 사무처
제 10 장 지역협의회
제 11 장 초등돌봄연구회
제 12 장 조직운영국
제 13 장 보 칙
제 14 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 정관 제45조에 의거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본 법인의 명칭은 정관에 의하며, 이사회와 사무처 중심의 중앙본부를 ‘중앙본부’라 칭한다. ②각 기구별 명칭은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OO지회,OO연구회,OO국 등) 또는 (사)초등돌봄교사연합회(OO지회,OO연구회,OO국 등)로 한다.

제3조(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초등학교 돌봄학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2. 돌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초등학교 돌봄에 관한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
4. 초등학교 돌봄교사의 자질 향상,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5. 초등학교 학생대상 안전교육 활동
6. 초등학생과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활동
7. 어린이 돌봄관련 안전교육 위탁관리 사업
8.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 법인에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초등학교 돌봄교사로 재직중이며 본 법인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입한 자.
2. 준회원 : 정회원 유지중 퇴직 후 본인이 원하여 회비를 납부 한 자.
3. 명예회원 : 본 법인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이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2/3동의를 얻고 이사회가 이를 수락 한 자(단, 회비 납부 의무 규정은 없다).

제5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본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본부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중앙본부 및 지회에 탈퇴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입과 탈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가입 및 탈퇴신청서는 전국 동일 규정 적용을 위해 홈페이지 또는 공식카페의 자료실을 활용하며 본 중앙사무처로 이메일(esdta6566@naver.com) 접수한다.
2. 정회원의 입·탈퇴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지회에서 최종 사무처에 문서로 전달되어야 하며 15일 전 통보는 당월에 적용하며 15일 이후 통보는 익월로 적용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① 정회원은 가입함과 동시에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 있는 동안 본 법인의 운영상 특별히 정해놓은 비밀규정이 있을 시, 이에 대해 제 3자에게 누설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진다.

- ③ 정회원은 본 법인 임원 선출권 및 임원이 될 수 있다. 단, 임원은 가입 후 3년 경과자
- ④정회원은 본 법인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과 교육 및 워크숍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⑤정회원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와 공식카페 관련 활동 및 모든 정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단, 홈페이지 및 카페 활동 중 운영자 관련 사항은 제한 될 수 있다).
- ⑥준회원은 본 법인 정회원에 준하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 ⑦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 법인 행사에 초대할 수 있으며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2/3의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 1. 본 법인의 명예에 상당한 위해를 끼친 자
- 2.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3. 본 법인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한 자
- 4. 본 법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자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선임) ①본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임원과 등기하지 않는 임원을 둔다. ②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③임원의 종류와 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며 이외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외부이사는 해당 임기 변경시에 당해 운영위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내부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9조(임원의 자격)

- 1. 임원의 자격
 - 가. 내부이사 : 등기임원이며 정회원 5년이상인자, 본부 운영위원 및 지회임원을 역임한 자
 - 나. 외부이사: 등기임원이며 돌봄관련 사회적으로 권위 있는 자
 - 다. 감사 : 등기하지 않으며 운영위원을 역임한 자

제4장 총 회

제10조(총회개최) 정기총회는 정관에 의하며 총회개최는 1월 셋째주 토요일에 한다. 단,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 후 공지한다.

제5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

- ① 이사의 정수는 정관에 따른다.
- ② 이사참석 과반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이사 과반으로 심의 및 의결 한다.

- ③ 2인 감사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감찰한다.
- ④ 이사회는 정관에 의하여 소집한다.
- ⑤ 이사회 참석자는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6장 기 구

제12조(기구의 구성) 본 법인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지역협의회
- 2. 초등돌봄연구회
- 3. 정책국
- 4. 정보국
- 5. 홍보국
- 6. 프로그램개발국
- 7. 기타(안전국, 안전산악회 등)

제13조(각 기구의 권리)

- 1. 본 법인의 추진 정책에 대해 건의 할 수 있고,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 한다.
- 2. 본 법인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3. 총회승인 사업 실행에서 본부로부터 운영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14조(각 기구의 의무) ①각 기구는 대외적 의견제시 및 발표에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 사업, 정책방향 및 결정사항에 반하여 활동 할 수 없다. ②각 조직 기구는 본 법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각 기구는 본부(이사회 및 사무처)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 및 감사인의 감사에 응해야 한다.

제15조(각 기구의 구성원)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기구별 자체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구성원의 임기는 각 기구의 실정에 따라 운영 규정에 둘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16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후원금은 운영재산으로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 ① 기본재산은 상기 금액(3,200,000)을 별도 예치한다.
- ② 부동산재산은 본 법인의 주사무소 임대 보증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 ③ 운영재산은 정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을 합쳐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며, 사용내역을 분기별 공지 한다.

제17조(회계의 구분) 본 법인 회원의 회비는 목적사업회계로, 사업 및 기타 수익금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8조(재원) ①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출연금과 회비
 2. 기부금 및 후원금
 3. 기본재산의 과실
 4. 사업수익금
 5. 기타 수익금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9조(회원의 회비)

1. 회원의 회비는 연 6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연납으로 하되 탈퇴 시 반환하지 않는다.
3. 회원의 회비는 법인 회비계좌(우체국 012237-02-345066)로 직접 이체하거나 지회를 통해 일괄 이체한다.
4. 지회는 지회자체 회비를 수납할 수 있다.

제20조(회비의 사용) 정회원의 회비는 정관의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며 인건비, 사무처 운영 제반에 사용하며, 분기별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전체 보고한다.

제21조(지회운영비)

1. 지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의 회원은 개별 회원으로 본부 사무처에서 관리한다.
2. 지회 구성은 이사회 승인 후 이사장이 지회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인정한다.

제22조(경조사) 법인운영위원의 직계에 한하며 현금 10만원으로 한다.

제23조(강사료) 연수 시 강사료 지급은 강사료 지급기준(표)에 의한다.(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제8장 운영위원회

제24조(구성원) ①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포함 시킬 수 있다. 구성원 구분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 ② 구성원은 이사, 감사, 사무총장, 지회장, 지회임원 1인, 각 국장, 연구회장, 산악대장으로 한다.
- ③ 사회 저명인사중 이사회의 2/3찬성으로 추대된 자를 운영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25조(회의의 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소집 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2월 첫주 토요일과 11월 첫주 토요일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사장이 요청하고 운영위원 2/3 이상 의결시 변경 할 수 있다.
2. 회의에 소집된 자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조정신청)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조정신청자 및 피신청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① 회원과 지회의 민원 및 기타 분쟁 등

- ② 제8조(징계)에 따른 처분의 불복
- ③ 이사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9장 사무처

제27조(사무처) 사무처는 총회사업 추진 및 회원 관련 제반 실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사무총장 1인과 사무직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28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초등돌봄현장의 유경험자로 운영 및 대외활동에 있어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방향제시에 적합하며 청렴하고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자로 한다. ② 근로관계 적용시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국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시행세칙과 근로기준법이 상충할 때는 근로기준법을 우선 시 한다.

③ 사무총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운영과 관련된 정책 수립
2. 소속 직원의 인사와 업무수행 조정
3. 회원 및 임원 명단 관리
4. 정기적인 회의 준비
5. 각종 행사 주관
6. 이사회에서 간사 역할 수행
7. 회원들을 대표해서 권익보호를 위한 실무 수행

제29조(직원의근로계약) 직원의 근무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및 제수당 지급 등은 본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제10장 지역협의회

제30조(지역협의회의 개설)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 시·도에 지역협의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회개설은 최소인원(지회임원구성원)의 회원가입 3개월 유지와 이사회의 승인 후 차년도 총회에서 지회장 임명으로부터 시작되며 임명에 의하지 않은 지회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회운영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제반 활동은 분기별, 또는 지회총회 개최 후 중앙본부에 보고한다.

제31조(지회명칭)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 부설 ‘OO지회’ (이하 본 지회)로 칭한다. 영문으로는 Elementary School Care Teacher Association(지역영문) 이라 표기한다. (예) 약칭 : ECTA-SEOUL)

제32조(지회임원 자격)

1. 정회원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한다.
2. 탈퇴 후 재가입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한다.

제33조(지회임원의 구성 및 역할)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지회임원은 본 법인의 등기임원과 구별하기 위해 (지회명)지회장, (지회명)지회부회장, (지회명)지회사무국장등으로 칭한다.

1. 지회장 : 본부와 지회간 간사역할 수행과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운영 총괄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3. 사무국장 : 지회운영 제반 공무 업무 수행
4. 재무부장 : 회비의 입출금 등 지회 재정 관리와 회계 보고
5. 기타 : 이 외의 필요임원 구성 및 임무는 지회규정에서 정하여 자유롭게 운영한다.

제34조(지회재정) 지회의 재정은 지역별 정기회비 및 순수찬조금, 중앙사무처 지원금으로 한다. 단, 외부찬조금은 지회회계로 별도 받을 수 없으며 중앙사무처를 통해 지회계좌로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은 회계에 관하여 중앙본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35조(지회회비관리)

1. 회비는 반드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대여 할 수 없다.
2. 정기모임 및 총회 시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원에게 상세 보고한다.

제11장 초등돌봄연구회

제36조(연구회 명칭)정관시행세칙 제12조 2에 의해 ‘사단법인 초등돌봄교사연합회(Elementary School Da/y-care Teacher Association)부설 초등돌봄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라 한다.

제37조(연구회의 목적) 본 연구회는 초등돌봄교실과 초등돌봄교사의 자질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나아가 초등돌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연구회 소재지) 연구회 사무소는 중앙본부 사무처에 둔다.

제39조(연구회 구성원) 연구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선임연구사 1명
3. 연구사 7명이내, 프로그램개발팀원 10명이내
4. 이사 1명
5. 사무처 1명
6. 자문연구위원 :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7. 고문 : 직전 회장을 영입할 수 있다.

제40조(연구회 수행)

1. 초등돌봄관련 학술 문헌 연구
2. 돌봄연구 과제 수탁사업

3. 기타 필요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제41조(연구사) 연구회 구성원의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우선 한다.

1. 회장 : 일반연구사를 거쳐 선임연구사가 회장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회 내 또는 이사회의 반대가 있을 시 연구사 전체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2. 선임연구사: 일반연구사 중 연구사 경력에 따라 우선하며 회장이 지목한다.
3. 일반연구사
 - 1) 초등돌봄교실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를 우선한다.
 - 2) 석사학위 이상인 자를 우선 한다.
 - 3)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자격을 승인받은자

제42조(연구사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의 의무를 진다.
 - 선임연구사는 연구회 회무의 의무를 진다.
 - 연구회 자체 회비가 있을 경우 납부의 의무를 진다.
 - 연구회내에서 발생하는 관련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2. 권리
 - 제5조의 사업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 연구회를 탈퇴 할 경우 탈퇴의 사유와 함께 회장에게 서면제출하고 탈퇴한다.

제43조(연구사 임기) 연구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2. 선임연구사 :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사 :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4. 프로그램개발팀원 :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4조(연구회의 운용기금)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구회 회비 및 후원금
2. 기타 수익금
3.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법인을 통해 교육연구비 및 연구회 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2장 조직운영국

제45조(구성)

1.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정책국, 홍보국, 정보국, 프로그램개발국을 둘 수 있다.
2. 각 국의 국장은 정회원중 사무처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3. 각 국의 활동은 사무처와 협의하고 운영자료는 사무처에서 보관한다.

4. 각 국의 운영계획 수립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각 국의 운영 예산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지원받는다.
5. 구성원 및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정책국]

1. 구성원
 - 1) 전국 지회 회장단중 1인을 팀원으로 구성하며 팀원 중 1인을 국장으로 자체 선출한다.
 - 2)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활동
 - 1) 초등돌봄관련 전국현황과악 및 정책제안을 다양하게 표출 하는데 주력한다.
 - 2) 정책국장은 팀원간 수집한 정보를 통해 정책토론회 외 총회에서 승인한 사업관련 업무 추진 경과 및 지역 현안을 사무처와 공유하며 운영위원회에 수시 보고한다.
 - 3) 연 2회이상 협의회를 가질 수 있으며 사무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국]

1. 구성원
 - 1) 국장 1명 외 팀원을 둘 수 있다.
 - 2) 팀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국장이 지명한다.
2. 활동
 - 1) 공식카페 운영 및 초등돌봄 관련 자료수집과 공유를 통해 전국 하나 되기에 노력
 - 2)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보국]

1. 구성원
 - 1) 국장 1명 외 팀원을 둘 수 있다.
 - 2) 팀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국장이 지명한다.
2. 활동
 - 1) 운영을 위한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하며 홍보국 팀원의 필요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갖는다. 협의회비는 사무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 본부 및 지회 제반 활동을 다양한 매체에 홍보 하며 전국 지회별 홍보부장의 협조를 통해 연합회의 소식지를 발행 및 보급하여 회원 증대 방안에 노력한다.
 - 3) 소식지 발행 예산은 홍보 후원금을 사용한다.

[안전산악회]

1. 구성원
 - 1) 산악대장 1명과 총무를 둘 수 있다.
 - 2) 산악대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총무는 산악대장이 지명한다.
2. 활동
 - 1) 산악회의 세부 운영은 당해연도 첫 운영위원회의에서 계획, 발표하고 추진 실행한다.
 - 2) 산행 필요경비는 참가자 개인에 의하며 협찬 및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개발국]

1. 목적 : 정관의 목적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함으로써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원 :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진으로 프로그램개발팀원 등다.
3. 선발기준 :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다수의 인원과 그 인원 중 1인을 자체 선출하여 대표(국장)를 정한다. 대표 외 구성원은 팀원으로 지칭한다.
3. 프로그램 구성 : 초등돌봄교실에서 활용할 내용으로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4. 이 외의 필요 기준은 연구회 기준에 준한다.

제46조(자문위원) 사회저명인사 및 이사 역임자중 본 법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로써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3장 보 칙

제47조(외부기관 연계 및 수상자 선정기준) ①초등돌봄교사 5년 이상 근무경력이고 정회원이며 본 법인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사무총장의 추천공적조서를 통해 이사회 심의의결된 자로 한다.

② 프로그램개발이나 소식지 등과 관련하여 원고를 낼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 재정에 의하며,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8조(협력단체)

- ① 본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를 협력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협력단체는 본 연합회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 후원하여야 하고 본 연합회는 협력단체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③협력단체의 지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승인하고 사무처에서 시행한다.

제49조(후원단체 및 후원금) 본 법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를 둘 수 있다. 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모든 후원금은 중앙본부 사무처를 통해서 수납한다. 지회후원금은 중앙 사무처를 통해 지회 계좌로 지급한다. 중앙 사무처에 보고되지 않은 후원금 수납으로 발생한 문제는 중앙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2. 후원금의 사용처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3. 후원금 상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 칙]

제50조(시행세칙의 효력)

① 시행세칙의 효력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때부터 발효하며 본 법인의 정관에 준한다. ②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 및 일반규정에 준한다. 다만, 통상 관례 및 일

반규정에 준할 수 없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 ③시행세칙은 직인으로 간인하고 간인하지 않은 시행세칙은 인정하지 않는다. 끝.